

# 동해에서의 관할권 주장 중첩과 불법어업에 대한 법집행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Hee Cheol, YANG

Ocean Policy Institute, KIOST

**핵심용어** : 동해, 관할권 주장 중첩, 불법어업, 해상법집행

**Key Words** : East Sea, Overlapping claim area, illegal fishing activities, Maritime Law Enforcement

## 1. 서 언

동해는 남북한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NLL, 북러간 해상경계협정(영해, EEZ/CS)이 국가간 해상경계선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외에 안정적 해양관할권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일간에는 어업협정을 통해 어족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협약상의 잠정약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양경계 미확정수역의 광범위한 존재는 상시적 갈등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 (중략)

동해 수역에서는 특히 중국어선의 대규모 진출에 따른 법집행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진출은 북한으로부터 입어 허가를 받은 선박, 허가증 위조 혹은 무허가 등의 불법어업 행위, 관할권 주장 중첩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행위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해수역에서의 해양관할권 중첩현황과 중국어선의 어업행위에 대한 법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동해 관할권 현황과 중첩

동해는 남북한,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지역이다. 다만, 북러간에는 1985년과 1986년 협정을 통해 육지경계 끝단에서 영해, EEZ 경계획정을 완료한 바 있다. 한일간에는 독도문제로 인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해양관할권 중첩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이는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 경우를 포함한다. 러일 및 한일러 간 해양관할권 미확정 현상 역시 동해 수역에서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 의한 해양관할주장 중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중략)

주목할 만한 것은,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관련국의 법집행은 자제될 필요는 있으나, 정지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때의 '자제'는 타방을 대상으로 하

는 당사국간의 법집행 문제에 제한되며, 제3국에 대하여는 정상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3. 동해 어업행위에 대한 법집행

동해에서 어업행위에 대한 법집행은 특히 대화퇴 어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역이 4개국(북한 포함)의 관할권 주장이 중첩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역별로는 NLL을 기준으로 한 남쪽수역, 그 위쪽수역으로 대화퇴를 포함하는 수역, 북러 경계선 북동쪽이면서 일러간 미경계수역 등에서의 법집행 정도는 행위자(국가)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중략)

이 외에 동해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법집행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지와 관련된다. 다만, 구분할 것은 (1) 북한 입어허가증을 받은 선박, (2) 입어허가증을 받지 않은 선박인데, 전자는 다시 (1-1) 입어허가 수역 내의 어업활동, (1-2) 입어허가 수역 외측에서의 어업활동으로 구분되어 접근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입어 허가를 받는 중국어선의 입어조건에는 범위와 어종,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어범위에서 이탈하여 조업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어업으로 간주, 법집행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중국 국내법 역시 동해 수역은 원양어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또한 제언할 필요가 있다. ... (중략)

## 4. 결 론

동해 수산자원의 남획 현상은 황해에서 중국불법어선에 의한 피해의 정도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수역별로 행위어선의 국적에 따라 법집행 수위는 조절될 필요는 있으나, 제3국 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은 우리나라의 관할권 주장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First Author : ceaser@kiost.ac, 051-664-3720